

3.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2년 9월 30일

○ 발 의 자 : 이성오·권기훈·김태우·박종필·전경원·정일균  
조경구·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 상정일자 :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7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성오 의원)

###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각종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출자·출연기관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해 기록물 관리의무 부여(안 제17조).
- 상위법령 적용 조문 변경(안 제14조제1항3호).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 ○ 이 개정 조례안은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에 공공기록물 대상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안을 신설·규정함으로써, 대상 기관이 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적용하는 법령의 조문을 변경하였고,
- ▶ 안 제17조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에 근거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기록물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다만, 100분의 50미만의 출자기관은 제외하도록 하였음.

- 특별법<sup>2)</sup>에 의하여 설립되어, 이미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4곳을 제외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록물 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출자·출연기관은 (주)엑스코 등 4곳이 될 전망이다.

### 【개정조례안 적용 대상 기관 등】

개정조례안 적용 기관(4곳)	특별법(설립) 적용 기관(4곳)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의료원
대구테크노파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양기관 통합진행 중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기록물 관리업무가 부여되는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sup>3)</sup>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 등 기록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호 생략)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대구신용보증재단), 지역문화진흥법(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관(行政博物館)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이 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령 개정 에 맞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 의무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 기록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p>○ 출자·출연기관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는?</p> <p>○ 기록물 관리의무가 부여되면 해당 기관에 담당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p> <p>문화예술진흥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도 여러 기관이 통합되면서 기관이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기록관 설치 등 조례 시행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겠음.</p>	<p>○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기록물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임.</p> <p>○ 규정상 기록물 생산량이 연간 1,000권 이상, 보존기록물 5,000권 이상일때는 기록관을 운영하여야하며,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전문요원이 기록물을 관리해야함. 현재 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의료원은 기록관 설치기준에 해당되어 기록관을 운영중이며, 조례 시행에 따라 기록관 신규 설치, 전문인력 확보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음.</p>		

## 5. 토론 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